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62
----------	-------

발의연월일 : 2025. 8. 13.

발의자 : 이만희 · 서천호 · 엄태영

김기웅 · 우재준 · 이성권

김대식 · 구자근 · 안철수

조은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미환류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데,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투자 · 임금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투자 ·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2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 “2032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해당 사업연도 [<u>2025년 12월 31일</u>]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p>	<p>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 <u>2030년 12월 31일</u> -----</p>

